

가정학의 사회서비스: 한국의 실태

정 금 주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기정경영과장)

I. 개요

최근에 학부제, 복수전공제 및 최소학점제, 전공필수과목 폐지 등이 실시되면서 구조조정차원에서 논의되어온 대학간의 big deal의 제안 등으로 가정학의 정체성(identity)에 관한 문제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가정복지서비스 및 가정복지사제도 등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실천학문으로서 가정학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간주된다.

먼저, 가정학의 사회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정학, 가정복지, 가정서비스 등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정학은 가정생활의 향상과 인간의 복지 향상, 삶의 질 향상, 인류에 공헌하는 학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복지는 가정생활상에서 발생하는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가정 스스로 생활의 유지·인격의 형성 및 발달·공동문화의 창조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실천과정과 그 결과로 인식하며(송혜림, 1999). 가정복지서비스는 가족자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정의 기능을 지지, 보충, 대체해 주는 서비스(이승미, 1999)가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가정학의 대 사회적 사명 내지 역할을 요약해 보면, 가정복지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가정의 수행기능을 지원하고(유영주, 1995), 인간과 생활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연구와 이를 통한 사회적 기여(이기준 외, 1996)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학의 사회서비스는 가정학이 사회에 미치는 편의성 또는 가정학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넓게 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가정복지 보다 더 광의의 개념이면서 가정학의 대 사회적 사명이나 사회적 위상을 내포함과 동시에 “가정학이 사회적으로 어떤 효용을 창출할 것인가?”, “가정학 전공자들에게 사회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어떠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인가?”, “가정학의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가시화 시켜 가정학에 대한 사회 인식의 토대를 확보해 나갈 것인가?”하는 등의 문제를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정학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가정학의 사회서비스 현황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도 및 기구, 그리고 가정학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등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II. 우리 나라 가정학의 사회서비스 현황 및 내용

우리 나라에서 가정복지서비스 등 일련의 가정학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로서, 초기에는 가족을 위한 기능 조정, 역할 개발 및 가치관 확립 등의 가족복지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었다. 그 이후로 이러한 가정복지 서비스는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사회변화에 따라 기존의 구빈복지에 기능복지를 강화하는 제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산업화 메커니즘에 따라 점차 가정과 사회의 유기적 공동체에 그 초점을 두게 되었다(임정빈 외, 1997). 그러나 많은 부분이 체계적이고 사회적인 효용 창출의 조망이 결여된 채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가정학은 사회서비스로서 사회적 인식 및 실천학문으로서 역량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인식을 기초로 최근의 관련 연구(임정빈 외, 1997 ; 노영주 외 1999)들은 가정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가정학의 사회서비스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가족관계(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고부관계, 이혼, 재혼, 가정폭력 등)
- 아동 및 청소년(성교육, 성폭력, 아동학대, 방과후 교육)
- 노후생활준비(건강, 여가, 죽음준비)
- 생활개선(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 여가 및 시간관리, 기기사용)
- 자산증식 및 조세(교육비 조달, 저축, 투자, 세금)
- 건강관리(식이요법, 성인병, 노인병)
-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재활용, 교환, 처분)
- 가정생활 관련 법률상식(가족법, 임대차보호법, 소비자보호법, 가정폭력방지법)
- 자원봉사(아동장애인 노인생활 지원 및 여가활용지도)
- 생활문화 육성(공동체생활모임, 캠프 등)
- 자조집단(이혼자 모임, 재혼자 모임, 치매노인가족모임 등)

III. 우리 나라의 가정학의 사회서비스 제도 및 기구

가정학의 사회서비스 실천을 위해서는 재정의 확보나 프로그램의 구성 등도 중요하지만 사회서비스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제도 및 체계의 개선, 전달자의 능력 개발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복지관련 기관이나 시설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모든 공적·사적 조직, 이들 조직간의 연계와 변화, 조직과 수혜자간의 상호관계는 서비스 전달체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서비스 전달자는 이 전달체계 내에서 서비스의 효율성,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가시화와 사회인식을 확산하는 촉매제로 작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전달자 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학의 사회서비스 전달자

현재 가정학 관련 서비스 전달자로는 학회 인증 차원의 가족상담사, 가족생활교육사, 소비자상담사, 소비자재무설계사, 공공가정관리사, 주택상담사에서부터 국가인증 차원의 중등교사, 주택관리사, 영양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가족생활교육사는 '97년부터 가족관계학회에서 자격을 발급·행정망과 연결하여 사회적 인식 및 활동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본래 의미의 가정학의 사회서비스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가정복지사와 가정학의 사회서비스 전달자라 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긴 하나 체계적인 공적전달망에 편입되어 있는 생활지도사에 대한 예를 통하여 가정학의 사회적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가정복지사

가정복지사는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을 갖춘 전문가와 이의 제도화를 통하여 가정학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한국가정관리학회 인증으로 1998년 2월 1,126명이 배출된 이래, 현재 약 2,000여 명에게 그 자격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가정복지사는 역사가 일천하여 전문 자격제도로서 위상이 약하며, 가족상담, 소비자상담, 식생활상담, 주거문제상담, 의생활상담 등을 총괄함으로써 specialist라기보다는 generalist로 인식되어질 가능성이 많다. 또한 이들의 활동무대가 될 공적·사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이에 흡수되지 못하여 그 활동이나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따라서 전문가로서의

가정복지사의 위상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설정하고 사적·공적 조직 및 전달체계망 확보, 가정복지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 생활지도사

생활지도사는 1955년 미국 Minnesota대학교 Macy 일행과 함께 내한한 가정지도 전문가 Simmons 여사가 한국의 농사교도 3대 사업의 하나로 농촌생활개선 지도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를 국가사업으로 채택하면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이어 1957년 농사교도법 제정으로 농사원 교도국(현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에 농촌가정과(현 생활개선과)가 창설되고 각 시·군 농사교도소(현 농업기술센터)에 가정교도원(현 생활지도사)을 두도록 하였고, 1958년 생활개선 전문기술원 채용 이후에 도 농사원 및 시·군 농사교도소에 배치된 가정교도원 91명은 의·식·주생활, 가정관리 및 보건위생 등 농촌생활에 관련된 사회서비스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1962년, 농촌진흥청이 발족되면서 오늘의 생활개선과로 개칭되었고 그 역할 또한 다양하게 발전하여 농촌주거 및 농작업 환경 조성, 농촌여성 교육 및 조직체(생활개선회) 육성, 농촌여성 일감갖기 및 여성농업인 정보화 지원 등을 주요 임무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1968년, 우리 정부는 UNICEF, FAO와 공동으로 응용영양사업(Applied Nutrition Project)을 추진하여 20여년 동안 1,880개의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농민의 식생활 및 영양 향상에 주력한 결과, 농가의 영양수준 개선에 기여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종사하는 생활지도인력은 2000년 2월 현재 633명(국가직 10명, 지방직 623명)이며, 이들은 농림수산 직군, 생활지도 직렬, 농촌생활 직류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전국적인 공적 전달체계망이 구축되어 있어 현존의 다른 어떤 체계보다도 효율적으로 가정학을 사회서비스화 하고 있다. 이들의 학력은 4.1%가 대학원졸, 74.8% 대졸, 13.3% 전문대졸이며, 7.8%는 고졸이다. 전공별로는 가정학계열 이 64.6%, 농학 및 농촌개발이 16.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지도사들은 가정부양체계의 지원 및 가정문제 해결에 관한 프로그램 등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전달체계 내에 규정된 업무의 방향과 제한된 활동범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을 지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같은 공적 전달체계 내에 가지고 있는데, 농촌생활연구소(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가 그것이다. 응용영양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활지도요원의 체계적인 능력 개발과 농촌여성 교육, 농민영양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농가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높여주기 위하여 1978년에 농촌영양개선연수원으로 설립된 이후, 1994년에 농촌생활연구소로 개편되면서부터는 농촌생활 전반에 관한 연구기능이 보강되었다. 농촌생활연구소는 농촌여성 및 농촌가족, 소비생활 및 농촌생활문화, 농작업 및 주거환경, 농산식품 및 응용영

양 등의 연구와 생활지도사 전문화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인력은 35명에 불과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촌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가정학의 사회적 서비스 기능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생활지도사를 가정학의 사회서비스 전문가로 육성하고 이들의 역할을 뒷받침하는 농촌생활연구의 발전을 위한 가정학계의 보다 폭넓은 관심과 후원이 요구된다.

IV. 가정학 사회서비스의 발전방향

급속한 사회변화와 다른 학문들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가정학(생활과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실천성, 응용성에 대한 강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이 가정학이 겪고 있는 정체성 부재는 무엇보다도 가정학의 사회적 인식 기반과 사회적 합의점 도출의 실패, 더 나아가 가정학 전공자들이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일정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의 부재 등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가정학의 실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보나 프로그램의 구성에 앞서 가정학의 사회서비스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제도 및 체계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사적 전달체계망인 가정학 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매체로 해당 지역사회에 가정복지사들을 흡수·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가정학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대표성을 갖는 명실상부한 행정적 공적 체계망이 부재한 현 시점에서 이를 확보하는 일은 여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장시간이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사적 전달체계망을 구축하여 이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적체계망의 활성화를 통해 공적체계망을 구축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법제화했던 과정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1948년 이후 대학에서 사회복지 인력을 양성해 오면서 1967년에 한국사회사업가 협회를 조직·활동해 오다가 1983년에 이를 입법화하여 공적체계망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사이버상의 사회서비스 정보체계망 구축이다. 21세기의 가장 큰 사회적 특징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화 사회이다. 우리 나라의 인터넷 사용인구가 올해 들어 1,000만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정보화를 대표하는 사이버공간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가족과 사회집단에서 인간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가정학 사회서비스센터 정보망의 개설 또는 기존의 가정학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망의 종합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며, 이는 가정학의 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가정복지사제도의 입법화이다. 가정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는 전문성을 갖춘 질 높은 가정복지사 자격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공적인 전달체계뿐만 아니라 가정학의 사회서비스 관련업체에 취업하거나 개인이 가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아주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정학의 사회적 서비스 관련 전문가 제도들의 체계화 및 효율적인 편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자격증 인증을 주관하는 조직체들의 지속적인 이해와 상호 협조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협력은 가정학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으며, 미래 가정의 변화방향 속에서 적절한 서비스 기능을 발굴하고 바람직한 서비스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노영주·허정원·서지원·서선희(1999). 가정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의 재개념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7권 2호.
- 대한민국 현대 법령집(1994). 제 4집 국가공무원편. 한국법제연구원.
- 송해균(1984). 농촌생활개선지도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송혜림(1999). 가정복지의 개념에 대한 가정학적 관점의 정립. 21세기 가정복지의 지향과 사회적 실천.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유영주(1995). 가정학과 가정복지. 대한가정학회 제48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기춘·홍형옥·황인경·신화용·김외숙·유혜경(1996). 21세기 가정학의 발전적 과제. 대한가정학회 제49차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승미(1999). 가정복지사의 역할과 가정복지서비스의 실천방안. 21세기 가정복지의 지향과 사회적 실천.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임정빈·김양희·이기영·홍형옥·계선자·이정숙·김순미(1997).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5권 3호.